

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서

※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60일
신청기관 (단체)	기관(단체)명		
	대표자	전화번호	
	사업자등록번호	팩스번호	
	주소		
	담당자	담당자 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)/전자우편주소	

「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기관(단체) 대표 (서명 또는 인)

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1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. 운영계획서 3. 「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1부
------	---

